# 특허 출원 및 등록 과정

1. 특허 아이디어 발안: 특허에서 중요한 것은 '신규성, 진보성, 실질 이용가능성'이며 유효성을 뒷받침할 실험결과나 자료가 있으면 좋지만 필수는 아니다. (심지어 같은 아이디어도 명세서 작성 요령에 따라 다수의 특허 출원 가능) - 대부분의 경우 진보성에서 승인 여부가 판가름

2. 특허 사전조사 및 : 특허 검색은 kipris(www.kipris.or.kr)를 주로 사용하며 구글특허(https://patents.google.com)에서도 검색 가능 (그 외 유료 사이트 wipson(www.wipson.com)도 특허 검색이 가능한데 현재는 GIST에서 서비스 사용 결제를 중단하여 사용 불가능).

3. 초안 작성: 신규성을 위주로 유사특허 요약을 포함하여 ppt 슬라이드 10장 내외로 준비 → 교수님과 ①발명의 명칭, ②발명자 명단 및 지분율, ③과제사사, ④출원인 확인 (보통 광주과학기술원 100%) 를 상의 → 발명설명서 작성 → GIST 발명신고 홈페이지 IPMS(https://pms.gist.ac.kr)에 발명신고서 제출 → 특허 변리사와 요약서 및 명세서 논의 (이렇게 진행하면 변리사가 명세서 작성. 그러나 특허의 연구적 메리트나 차별성이 변리사에게 완벽히 전달이 안될 수 있고 변리사는 세세한 연구내용의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, 청구범위 설정 및 청구항 내용을 잘못 잡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. 따라서, 명세서 초안을 본인이 직접 작성 후 변리사에게 제출 및 상의하여 특허 출원에 적합하도록 다듬는 것도 하나의 방법.)

4. 변리사가 특허 출원 신청 (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이 출원 가능) 및 등록진행
: 특허 출원이 거절 될 경우 거절이유를 확인 후 변리사와 의견서/보정서 작성 → 출원 승인 → 특허 공개 기간 (1년 6개월) → 심사 → 특허 등록

5. GIST 발명신고 홈페이지 IPMS 매월 확인 필요: 출원후 등록이 거절될때도 변리사와 공동 대응. 거절 이유 해소가 안될 경우 변리사가 재심사 청구 가능

6. 특허 등록: 특허 등록 후 특허등록증과 명세서를 스캔하여 파일로 보관(EMBL Common Folder)후 홈페이지 등록

7. 국내 출원 이후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해외 특허 출원 가능: PCT(특허협력조약)을 통한 해외 특허 출원 방법도 있음 (**변리사를 통한 출원 및 등록비용은 연구과제의 간접비. 해외특허 비용은 GTI의 지원**)

특허청
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

# 특허 출원 및 등록 관련 부가정보

1. **신규성**: 출원하기 전 이미 알려진 기술인가 아닌가?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기술이면 다른 부분이 미흡해도 출원 가능성 높음. 하지만, 대부분 경우 기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개선 및 발전 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규성만으로 출원이나 등록이 되는 경우는 드뭄.

2. **진보성**: 기존에 알려진 기술이나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기술 혹은 특정 분야에 거의 적용된 바 없는 기술을 활용해 기존 기술을 발전시킨 것. 또는, 기존 기술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추가적 처리를 통해 기존보다 개선된 기능 및 성능의 발현 여부.

3. **실질 이용가능성**: 기술의 신규성 및 진보성과 별개로 산업에 이용 가능한 기술이여야 함. 예를 들어, 출원 신청한 기술이 비인륜적인 인체 실험이나 과도한 동물 실험을 필요로 하거나 혹은 기술의 주 용도를 보았을 때 큰 인명피해가 예상될 경우는 출원 및 등록 불가.